



[2019. 8. 20.] [366 , 2019. 8. 20.,]

() 044 - 200 - 5523, 5524

1

1 () 「 」
. < 2008. 7. 8.>

2 () . < 2008. 7. 8., 2009. 12. 14., 2018. 5. 1.>

1. " " (「 」 2 5 . 2) 85 96

(" ")가 24
가 , 가

2. " "

3. " "

4. <2018. 5. 1.>

5. " " [(船外機)]

6. " "

7. " "

8. " " 1

9. " " 가

10. " "

3 (.) . 가 가
(「 」 (" ") 42) 가

. < 1999. 5. 17., 2008. 7. 8.,

2014. 12. 31.>

1

. < 2008. 7.

8.>

3 2() 3 2 1

3 2 1

1. 21 1 1

2. 3 2 1 1

3. 3 2 1 2 「 」 25

1

4. . , 1
 1 48 6
 3
 2 3 2 1
 , 7 (證印)

[2018. 5. 1.]

2 가

4 (가) 8 1 가 (가) . < 2002. 7. 15., 2008. 2. 4., 2008. 2. 27.,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2013. 10. 30.>

1. 가. 「 」 2 2
 . 「 」 45
 . 「 」 24 2
2. . . . (" . . "

1
 [2001. 12. 31.]

5 (가) 8 1 가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 1998. 1. 24.,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4. 8. 7., 2008. 3. 3., 2008. 7. 8., 2013. 3. 24.>

- 1.
2. <1999. 5. 17.>
- 3.
- 4.
- 5.
- 6.
- 7.
- 8.

4 5 가 , 가 가 6 가 . <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13. 3. 24.>

6 (가) 8 1 " " . < 2001. 12. 31.,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1. 3. 30., 2013.

3. 24.>

- 1. 2
- 2. 2

가. 「 」 6 · 9 11 · 가

[1999. 5. 17.]

7 (· 가)

· · 8 4

· 가 . < 1998. 1. 24.,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 1.
- 2. (·)
- 3. <1999. 5. 17.>
<2013. 10. 30.>

8 <1998. 1. 24.>

9 <1999. 5. 17.>

10 <1999. 5. 17.>

11 <2009. 12. 14.>

3

1

12 () 14 1 2

(" ") 20 ·
(" ") 24

. < 1998. 1. 24., 1998. 9. 5.,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 1.
- 2.
- 3.
- 4.
- 5.
- 6. <2014. 12. 31.>
- 7.

1

.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가

.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3 <2009. 12. 14.>

14 () 12 1

" ") 21 .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가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4. 12. 31.>

2

.<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 2009. 12. 14., 2013. 3. 24.>

15 () 14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가

.<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14 1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08. 7. 8.]

16 <2014. 12. 31.>

17 () 37 1 「 」 13

22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2.

3.

4.

5.

6. <2014. 12. 31.>

7.

1

23

24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4 1

2

.< 2008. 7. 8.>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4 2 · 3 15 3

.< 2008. 7. 8.>

[2008. 7. 8.]

18 () 37 3 「 」 3 1 4
7 3 25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 1.
- 2.
- 3.
- 4.

(" ")

1

,

26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4 2 · 3 15 3

.< 2008. 7. 8.>

[2008. 7. 8.]

19 <2008. 7. 8.>

20 <2009. 12. 14.>

2

21 () 13 1 27
가 22 1
가 가
1 가 가

.<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2. 7. 15., 2008. 7. 8., 2012. 6. 7.>

1. 가 가 (2)

2.

3. (「 」 2)

4. <1999. 5. 17.>

5. <2002. 7. 15.>

6. ()

7. <2008. 7. 8.>

13 1 " "

.< 1998. 1. 24., 1999. 5. 17., 2000. 1. 6.,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19
 2. 「 」 8
 3. <2008. 7. 8.>
 4.
 . . 13 3 33
 . (" ") 1 2
 .< 2002. 7. 15.,
 2008. 7. 8., 2018. 5. 1.>

22 () 13 4
 . (.) . . 가 .
 . , .< 1999. 5. 17., 2008. 7. 8.>

1. 가 가
 2. 가 . . .
 3. <1999. 5. 17.>
 4.

 <1999. 5. 17.>
 . . 1 . 가
 . . .<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1. . 가
 2. .
 <1999. 5. 17.>
 <1999. 5. 17.>
 <1999. 5. 17.>

23 () . . 21 1
 28 .<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7. 10. 18.,
 2008. 7. 8., 2009. 12. 14.>

- 1.
- 2.
- 3.
- 4.
- 5.
- 6.
7. ()
- 8.
- 9.
- 10.
- 11.

12.

가.

.

(1)

(2)

(3)

(4)

(5)

13.

가.

.

.

.

.

14.

15.

16.

17.

18.

19.

20.

1

.< 2007. 10. 18.>

24 (

.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09. 12. 14., 2013. 3. 24.>

1.

(

2.

가

1

3. 24.>

25 (

5. 17., 2008. 7. 8., 2017. 1. 2.>

1

12. 14., 2010. 4. 28.>

<1999. 5. 17.>

26 () 17 「 가 」 16 1 17
 가 가 (가 가 . .) 가
 30 (. 가 6) 27
 . . , 가 「 」 16 1
 (. .)

. < 2012. 6. 7., 2018. 5. 1.>

1. .
2. .
3. 「 가 」 16 2 1 3 (17 가
 가 「 가 」 16 1 가
 가)
 . . 1 . .
 . 22 4
 . .
 . <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4. 12. 31.>
 . . 1 2 . 1
 . <

1999. 5. 17., 2002. 7. 15., 2008. 7. 8., 2011. 3. 30.>
[2012. 6. 7.]

27 <1999. 5. 17.>

28 () 가 가 . . . < 2002. 7. 15., 2008.
 7. 8., 2012. 6. 7., 2017. 1. 2.>
 . . 1 가

 가 , . <
 1998. 1. 24., 1998. 9. 5., 2002. 7. 15., 2008. 7. 8.>

29 () 19 1 . . 34
 . < 2017. 6. 28.>

- 1.
- 2.
- 3.
4. (「 」 2) 가.
 . . . (" ")
 ()

34 () 38
「 」 36 1
< 2002. 7. 15.,
2008. 7. 8., 2013. 10. 30.>

- 1.
- 2.

1 39
< 2002. 7. 15., 2008. 7. 8.>

가
< 2002. 7. 15.>

[2008. 7. 8.]

35 <1999. 5. 17.>

36 <1999. 5. 17.>

37 <1999. 5. 17.>

38 <1999. 5. 17.>

39 () 가 가
가 <

2002. 7. 15., 2008. 7. 8.>

- 1. 19 2
- 2. 19 3
- 3. <1999. 5. 17.>

40 <2009. 12. 14.>

4 < 2009. 12. 14.>

1 < 2009. 12. 14.>

41 () 4 1 " "
< 2013. 3. 24., 2018. 5. 1.>

- 1. . . .
- 2. 가

3. 21 1 5

- 4.
- 5.

[2009. 12. 14.]

42 () 5 1 " "
300 < 2013. 3.

24.>

- 1. 가
- 2. . . .

5 3 " "

.< 2013. 3. 24., 2018. 5. 1.>

- 1. 가 1
- 2.

[2009. 12. 14.]

42 2() 5 2 1 " 「 」 . < 2017. 6. 28., 2018. 5.

1., 2019. 3. 22.>

- 1.
- 2. 「 」
- 3. . . .
- 4. 「 」 8 27 1 . 3
- 5. 「 」 5 2 2 「 」 24 1 11

6. 2 (舷端) , [(圍壁)]

<2017. 6. 28.>

5 2 1 (" ")

3 .< 2013. 10. 30., 2017. 1. 2., 2018. 5. 1.,

2019. 3. 22.>

[2012. 3. 16.]

[2019. 3. 22.]

2 < 2009. 12. 14.>

43 () 21 1 1

40

. 50 53 1

, 3 5 . < 2013. 3. 24.>

- 1. 27 1 4 53 3 ()

- 2. ()

- 3. 27 1 5

- 4. 27 1 6

- 5. 27 1 7

21 1 1

40

. , 2 4 .<

2013. 3. 24.>

- 1. 27 1 1
- 2. 27 1 5
- 3. 27 1 6
- 4. 27 1 7

1 2 3 , 3 2
 4 1 .< 2013. 3. 24., 2018. 5. 1.>
 3 63 1 1

.< 2013. 3. 24.>

[2009. 12. 14.]

44 () 21 1 2 1 2 ,
 . , 2

.< 2011. 3. 30.>

1. 가 24
 1 3 3

2. 가 24
 가. 5
 1 3 3

. 5
 1) 1 : 3 3
)
 2) 2 : 1 3
 3
 21 1 2 40 43
 2 .< 2013. 3. 24.>

.< 2013. 3. 24.,

2018. 5. 1.>

1. 1 : 3 1 3 , 5 , 6 , 8 11 4 1
 2. 2 : 3 1 (), 2 (),
 3 , 5 (), 8 , 9 , 11
 3 63 1 1

.< 2013. 3. 24.>

1 가 3
 3

[2009. 12. 14.]

45 () .
 41 ,

. < 2013. 3. 24.>

1

12

. < 2013. 3. 24.>

2

2

가

1

2

가

1

[2009. 12. 14.]

46 () 21 1 3

가

2 1 가

. < 2013. 3. 24.>

1

40

. < 2013. 3. 24.>

1.

2.

[2009. 12. 14.]

47 () 21 1 4

가

<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1.

密性)

가.

(船樓)

(暴露部)

(가

)

(頂部甲板)

(閉圍)

(

)

2.

3. (舵)

4.

가 가

가

5.

6. 27 1 1

3

7.

24

3 7 (), 8 , 11

8.

9.

가

10.

11. , (" ")

12.

13. (堪航性) 가

14.

21 1 4

40

.< 2013. 3. 24., 2018. 5. 1.>

1. 43 2

2. ()

3. 가 가 (가 가)

1

1 14

3

63 1 1

.< 2013. 3. 24.>

[2009. 12. 14.]

48 () 21 1 5 가

1.

2.

3.

21 1 5

40

.< 2013. 3. 24.>

2

3 8 · 9 · 11

.< 2013. 3. 24.>

3

63 1

3 .< 2013. 3. 24.>

[2009. 12. 14.]

49 () 21 1 가 가

, 46 1

가

가

47

1 6

가

.< 2012. 3. 16., 2013. 3. 24.>

1. 5

2. 「 」 6 , 9 11 , 가

3. 가

(" ")

1 3

42

.< 2013. 3. 24.>

2

2

1

가

1. :

2.

가. 가

1

2

가

1

[2009. 12. 14.]

50 ()

22

1

43

4

.< 2013. 3. 24.>

1. ()

2. 27 1 5

3. 27 1 6

4. 27 1 7

1

2

[2009. 12. 14.]

51 ()

22

1

< 2013. 3. 24.>

1.

2. 「 」 6 , 9 11 , 가

3. 24

4.

[2009. 12. 14.]

52 ()

22

3

"

"

3

< 2013. 3. 24.>

1

44

()

.< 2013. 3. 24.>

2

54 4

.< 2013. 3. 24.>

3

4

45

.< 2013. 3. 24.>

1.
 2. 4 2 가
 3. 4 4
 4 4
 46 .< 2013. 3.

24.>

3

3

65

.< 2013. 3. 24.>

[2009. 12. 14.]

53 () 22 6 43

()

.< 2013. 3. 24.>

1

22 1

5

1

47

.< 2013. 3. 24.>

[2009. 12. 14.]

54 () 37 2 「 」 13 1 6

48

()

3

.< 2013. 3. 24.>

1.

2.

3.

4.

5. 51 1 3

1

3

4

1

7

.< 2018. 5. 1.>

37 2

「

」

13

4

24

가

[2009. 12. 14.]

55 () 37 2 「 」 14 1

1.

:

8

- 2. : 9
- 3. : 8
- 4. : 8
- 5. : 10
- 6. : 11
- 7. : 12
- 8. : 13

37 2 「 」 14 3
 24 .< 2012. 3. 16., 2018. 5. 1.>

- 1. 10 30 :
- 2. 30 : 1

2 14 .< 2012. 3. 16.>

[2009. 12. 14.]

56 () 37 2 「 」 14 2
 6

55 1 1 2 .< 2018. 5.

1.>

37 2 「 」 14 2 49 1 2
 8 2 (), 4 7 ()
) .< 2018. 5. 1.>

37 2 「 」 14 2 15
 9 1 가 8 1 가 (入渠) 가(上架)
 , 8 1 3 .< 2014.
 12. 31., 2018. 5. 1.>

3 가 가 .< 2013. 3. 24.>

3 15 .
 37 2 「 」 14 2 1 5
 16 .< 2018. 5. 1.>

[2009. 12. 14.]

57 () 21

.< 2013. 3. 24.>

[2009. 12. 14.]

58 () .

1

[2009. 12. 14.]

59 () 24 1 49 ()
) ()
 .< 2012. 6. 7., 2013. 3. 24.>

24 1 , .
 < 2013. 3. 24.>
) 1 (.<
) 50 .<
 2013. 3. 24.>
 [2009. 12. 14.]

59 2() 24 1) 51
 () .< 2013. 3. 24.>
 1. ()
 2.
 3.

24 1 .< 2013. 3. 24.>
 1) ,
 , 2
 , 65
 .< 2013. 3. 24.>
 [2009. 12. 14.]

59 3() 24 2 ()
 49 () .< 2012. 6. 7., 2013. 3. 24.>
) 1 ()
) 53
 .< 2013. 3. 24.>
 [2009. 12. 14.]

59 4() 24 2 1
 16 2 .
 24 2 1
 [2018. 5. 1.]

59 5() 24 3 1 (")
 ") 53 2 ()
) () .
 1. , ,
 2. 24 1 2 (" ")
 (가가)
 3. (「 가 」 「 」 .
) .
 4. 「 」 (" ") 4 2 1 4]
 5. .

가. 4 2 2 1

1)

2)

3)

4 2 2 2

1)

2)

3)

6. 59 6 2 ()

1 4 2

53 3

2

4 2

2

4

4 2

[2018. 5. 1.]

[59 5 60 2 <2018. 5. 1.>]

59 6() 4 2 2

53 4 ()

()

1. 4 2 2 1 : 가

2. 4 2 2 2 :

1

53 5

[2018. 5. 1.]

[59 6 60 3 <2018. 5. 1.>]

59 7() 24 3 2

16 2

24 3 2

[2018. 5. 1.]

[59 7 60 4 <2018. 5. 1.>]

60 () 25 1 ()

" ")

, (" ")

) , 가 , ,

17

[2018. 5. 1.]

60 2() 25 1

54

. < 2013. 3.

24., 2018. 5. 1.>

1. .

2. 60

3. (, " . ")

가.

.
. .
. .

4. (, " ")

가.

.
. .
. .

5.

1 60) , .
() , .

55

. < 2013. 3.

24., 2018. 5. 1.>

2

가

. <

2013. 3. 24.>

2

. < 2013. 3.

24., 2018. 5. 1.>

[2009. 12. 14.]

[2018. 5. 1.]

[59 5 <2018. 5. 1.>]

60 3() 25 1

가 60 2 2

54 ()

. < 2013. 3. 24., 2018. 5. 1.>

1.

2.

1

가

55

< 2013. 3. 24., 2018. 5. 1.>

[2009. 12. 14.]

[59 6 <2018. 5. 1.>]

60 4() 25 3 4

가

. < 2013. 3.

24., 2018. 5. 1.>

1. :

가.

2. : 600

3. : 600

1

(

) , 56

. < 2013. 3. 24., 2018. 5. 1.>

1. ,

2. ()

3. •

4. •

2

60 2 2

•

65

. < 2013. 3. 24., 2018. 5. 1.>

1

60 2 2

57

18

. < 2018. 5. 1.>

[2009. 12. 14.]

[59 7 <2018. 5. 1.>]

60 5() 26 1

18 2

1

[2018. 5. 1.]

60 6(•)

. < 2013. 3. 24., 2018. 5. 1.>

[2009. 12. 14.]

[59 8 <2018. 5. 1.>]

61 () 26 2 1

58

. < 2013. 3. 24., 2018. 5. 1.>

1. (Derrick) :

2. (Jib Crane):

3. :

4. :
 1 19
 59 .< 2018. 5. 1.>
 2 ,
 .< 2018. 5. 1.>
 26 2 2 1
 60 .< 2018.
 5. 1.>
 4 .< 2018. 5. 1.>
 [2009. 12. 14.]
 [2018. 5. 1.]

62 <2018. 5. 1.>

3 < 2009. 12. 14.>

63 () 27 1 , , . .

.< 2018. 5. 1.>

- 1. 27 1 1 1 2
- 가. 24 : 61
- . 24 : 62
- 2. 27 1 2 : 63
- 3. 27 1 3 : 64
- 4. 27 1 4 : 65
- 5. 27 1 5 : 66
- 5 2. 27 1 5 2 : 47
- 6. 27 1 6 : 67
- 7. 27 1 7 (.) : 68
- 8. 27 1 8 : 59

1 , , . .

.< 2018. 5. 1.>

[2009. 12. 14.]

64 () 27 1 1

.< 2013. 3. 24., 2018. 5. 1.>

1

.< 2013. 10. 30., 2014. 12. 31.>

- 1. 가
- 2. ()
- 3.
- 4. , ,

- 5. 「 」 25
- 6. 「 」 29 1 1 (裸潛漁業)
- 7. 46 1
- 8. 「 」 2 3
- 9. 「 」 5

.< 2013. 3. 24., 2018. 5. 1.>

[2009. 12. 14.]

65 () 27 2 , , . . 7 .<
 2018. 5. 1.>

[2009. 12. 14.]

66 () 28 2

- 1.
- 2. 3
- 3. 3
- 4.

가. (49 2)

. 1

1

[2009. 12. 14.]

67 () 28 3
 . , 1

- 1. : 3
- 2. : 5

1

69

.< 2013. 3. 24.>

- 1. :
- 2. :

2

.< 2013. 3. 24.>

1. 2 1 : 70

2. 2 2 :
[2009. 12. 14.]

68 () 29 " "
. < 2013. 3. 24.>

1. 「 」 6 · 9 11 · 가

2. 「 」 27 5

[2009. 12. 14.]

69 () 30 1 71
. < 2013. 3. 24.>

1 30 2

. < 2013. 3. 24.>

1

, 60 , 30

. < 2013. 3. 24.>

[2009. 12. 14.]

4 2 < 2017. 6. 28.>

69 2() 31 1
3 (5 " ")

「 」 2 1 가

71 2

1 31 2

30

1. ·

2.

3.

4. 가

2

. 2

,

3

71 3

[2017. 6. 28.]

69 3() 31 3 4 " "

1. 가 , 31 2 (

" ")

2. ·

3. .
[2017. 6. 28.]

69 4() 31 2
71 4

. 「 」 36 1
() 「 」 38 1 (「 」 20
5 가 , " ") . < 2018. 5. 1.>
1. 31 2 2 (

1)
2. 31 9 1 가

3. 5

4. ()
31 2 가

30 71 4

. 「 」 36 1
() (가
)

1. 3

2.
1 2

71 5

1. 31 2

2. 31 3

3.

3

71 6

() .

[2017. 6. 28.]

69 5() 31 2 2 가

1. (3): , ,

2. :21 (1)

3. : 1 가 40 , 60

, 가 1 가 .
31 7 1 2

2

1. : , ,

2. :6

1 3 ,

[2017. 6. 28.]

69 6() 31 4 2 19 2 .
[2017. 6. 28.]

69 7(.) 31 5
71 7 . . .
31 5 3

[2017. 6. 28.]

5 < 2017. 6. 28.>

70 () 37 2 「 」 74 1
72 . ,

. < 2013. 3. 24.>

1 73

. < 2013. 3. 24.>

74

「 」 7 3 . < 2013. 3. 24.>

37 2 「 」 74 3

75

[2009. 12. 14.]

70 2(.) 37 2 2 .

[2017. 6. 28.]

71 () 5 2 () 가 . () 가 .
(. .) 가 가 , 14 1 , 17 2
. , 18 2 , 33 .
. , 34 2 , 52 5
, 53 3 , 59 3 , 59 3 2
, 60 2 2 , 63 1 1 , 63
1 2 , 63 1 3 , 63 1 4
, 63 1 5 , 63 1 6 , 63 1 7
(.) , 67 3 1 , 69 4 3
, 70 4 (" ")

76

()
. < 2012. 6. 7., 2013. 3. 24., 2017. 6. 28., 2018. 5. 1.>

- 1. <2012. 6. 7.>
- 2.
- 3.

1 가
76 () 가
. < 2013. 3. 24.>
1 2 . < 2013. 3.
24.>
[2009. 12. 14.]

72 () ()
" . ") , . . < 1998.
1. 24., 1999. 5. 17., 2002. 7. 15.,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013. 10. 30.>
1. 가
2. .
3. .
4.
5. <1999. 5. 17.>
1 . < 1998.
1. 24., 2008. 3. 3., 2008. 7. 8., 2013. 3. 24.>

73 (.) . < 1998. 1. 24., 2008. 3. 3., 2013. 3. 24.>

73 2() 39 1 20 . < 2013. 3.
24.>
[2012. 6. 7.]

74 () 41 1 . <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 . <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2 「 」 77 1 . <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7. 8.>
. <
1998. 1. 24., 1998. 9. 5.,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13. 3. 24.>

75 (.) 41 4 . <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1999. 5. 17.>
1 . < 1998. 1. 24., 1998. 9. 5., 1999. 5. 17., 2001. 12. 31., 2007. 11. 23., 2008. 3. 3., 2008. 7. 8.,

2013. 3. 24.>

76 <2018. 5. 1.>

77 ()

3 ()

- 3)
- 1. 4 가 : 2017 1 1
- 2. 6 가 : 2017 1 1
- 3. 7 가 : 2017 1 1
- 4. 14 : 2017 1 1
- 5. 17 : 2017 1 1
- 6. 18 : 2017 1 1
- 7. 21 : 2017 1 1
- 8. 23 : 2017 1 1
- 9. 24 : 2017 1 1
- 10. 25 : 2017 1 1
- 11. 26 : 2017 1 1
- 12. 28 : 2017 1 1
- 13. 33 2 : 2017 1 1
- 14. 34 : 2017 1 1
- 15. 42 2 : 2017 1 1
- 16. 55 : 2017 1 1
- 17. 71 : 2017 1 1

[2017. 1. 2.]

< 1143 ,1994. 6. 16.>

- 1 ()
- 2 ()
- 3 ()
- 21 3 , 1 (5
- 6) 35 1
- 4 () 1
- 46 (
-) 25
- 5 ()
- 5 6
- 35

6 ()

61 1

1 61 2

1

7 ()

< 48 ,1998. 1. 24.>

< 70 ,1998. 9. 5.>()

1 ()

2 7

8 ()

2 4 8

9 1 2 12 1 1 " " " "

13 1 " 43 " " 6 " ," " " "

21 1 5 " 5 1 " " 4 1 2 "

28 2 " 가 59

" " 가 "

32 "(41

)" "[8 1 2

(" ")]"

37 1 " 21 1 1 " " 5 1 1 " ," 52 1

" " 1 2 " ,"3

" "5 "

4 (41 65)

5 " " " "

66 68 • 70 71

74 1 • 2 4 " " " " , 3

2

75 1 " " " " , " " " " , 2
 , 3 " " " " .

76 " " " " .
 3 " 25 3 • 53 3 55 4 " " 25 3 " .
 5 9 .
 1 2 " " " " .
 8 9 " " " " ,
 " " " " .
 19 " 11 1 • 20 1 • 40 1 64 1 " "
 11 1 • 20 1 40 1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22 " " " " " " ,
 " " " " " " .
 23 , 24 26 "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 "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 .
 25 " " " " " " ,
 " " " " " " .
 33 " " " " " " .
 40 41 " " " " " "
 " , .

- 5
 - 5
 - 2

-
- ()
42 53 .

9 ()

< 117 ,1999. 5. 17.>

()

()

가

69

()

2 2 , 10 11

39 2 4 .

2

2 " " " " , .

10

< 156 ,2000. 1. 6.>()

1 ()

2

3 ()

21 2 3 " 4 2 " " 26 2" .

< 212 ,2001. 12. 31.>

()

(가)

가

6

21 1

< 231 ,2002. 7. 15.>

2002 7 15 .

< 277 ,2004. 8. 7.>()

< 386 ,2007. 10. 18.>()

< 390 ,2007. 11. 23.>()

1 ()

2 22

23 ()

13 1 " 6 " " " .
32 2 " 8 1 2 " " " " 60 1
2 " , " (" ")" " (" ")"

74 1 4 " " " " , 3 "
" " " " 77 1 "

75 1 • 3 76 " " " " .

24

< 408 ,2008. 2. 4.>()

1 () 2008 2 4 .

2

3 ()

4 1 가 " 41 1 2 " " " " 2 2 " .

< 413 ,2008. 2. 27.>()

1 () .

2 3

4 ()

4 1 " 26 2 " " 「 」 24 2 " .

< 1 ,2008. 3. 3.> ()

1 ()

2 4

5 () ③⑥

③⑦

4 1 . , 5 1 . 2 , 7 1 . 2
, 11 1 . 2 , 12 1 . 2 . 3 , 14 1
3 , 15 1 3 , 16 1 . 2 , 17 1 6 . 2 .
4 , 18 1 . 2 . 3 , 19 , 20 1 . 2
, 24 1 1 . 2 , 32 2 , 72 1 . 2 , 73 , 74 1 .
2 . 4 , 75 1 . 3 , 76 , 1 , 2 , 3 ,
4 , 5 , 6 , 21 , 22 , 23 ,

24 26 " " " " .

6 , 21 2 33 2 " " "

" . 1 , 2 , 3 19 " "

" " , " " .

23 , 24 , 26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③⑧ <63>

< 19 ,2008. 7. 8.>

1 ()

2 ()

, .

< 101 ,2009. 12. 14.>

1 () .
 2 () 2010 4 22 4 1 , 68 2 16 3 1) 3)
 「 」 45 「 」 44 , 「 」 27 「 」 29 , 「
 」 41 3 1 「 」 43 3 .
 3 (2) 43 2
 (2008 10 1 .)

1. 7 : 2010 3 31
2. 6 7 : 2011 3 31
3. 6 : 2012 3 31

1 2 43 1

4 () 53

2 12 2 .

1. ()
2. 1

5 () 「 」

< 120 ,2010. 4. 28.>(가)

1 () .

2 5

6 ()

25 2 " 「 」 44 " " 「 」 47 " , 33 2 2
 " 「 」 29 " " 「 」 27 " , 64 2 " 「 」 38
 1 2 " " 「 」 29 1 1 " .

< 181 ,2011. 3. 30.>

1 () .

2 () 26 1 3

3 () 32 4

4 (가)
가 가 6 2

5 () 가 24 5
2 가 44 1 2 가 2

< 264 ,2012. 3. 16.>

1 () , 42 2 2012 7 15

2 () 55 2 2 3
1

3 <2013.10.30>

< 280 ,2012. 6. 7.>

1 ()

2 () 가

< 309 ,2012. 10. 5.>()

1 () . < >

2

3 ()

64 2 " 「 」 " 「 」 " 「 」 " .

4

< 1 ,2013. 3. 24.>()

1 ()

2 4

5 () ③③

③④

4 1 , , 5 1 , 2 , 7 1

, 2 , 12 1 , 7 , 2 .

3 , 14 1 4 , 15 1 3 , 16 1 • 2 , 17 1

, 7, 2 · 4, 18 1, 2 · 3, 24 1
1, 2, 32 2, 41 5, 43 1, 2
, 3 · 4, 44 2, 3, 4, 45
1, 2, 46 1, 2, 47 1 14 ·,
2, 5, 48 2 4, 49 1 3, 2, 50
1, 51 4, 52 2, 3 ·, 4,
5 · 7, 53 1 · 3, 54 1, 56 4, 57, 59
1 3, 59 2 1, 2 · 3, 59 3 1 · 2, 59
5 1, 2 4, 59 6 1 · 2, 59 7 1
, 2, 3, 59 8, 61 1, 2,
62 1, 64 1, 3 ·, 67 2, 3
, 69 1 · 2, 3, 70 1, 2 · 3, 71 1
, 2, 3, 72 1 ·, 2, 73,
74 1 · 2 · 4, 75 1 · 3, 76, 3 1, 2, 4 2
가, 4 · 5, 8 1, 11 2, 12 2, 16 2 가 1)가), 17
1 22),, 4 3)가), 19 2 가, 20 1 ·,
4, 1, 2 가, 2,
2 가, 3,
2 가, 4
6, 20, 1, 21, 22
7, 23, 24, 26, 40
, 43, 44, 45,
·, 46, 47, 48,
49, 50, 53, 54,
, 55, 59, 61, 62,
63, 68, 70, 71,
72, 75 " " " "
6, 21 2, 33 2, 41,
42 1, 2, 42 2 1, 52 1, 68
73 2 " " " "
1, 2,
, 3, 71
76, 1 " " " "
23, 24, 26, 47, 50, 53
, 55, 61, 62, 63, 64

68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㉓ <63>

< 51 ,2013. 10. 30.>

1 ()

2 () 16 3 21

< 63 ,2013. 12. 30.> ()

2014 1 1

< 127 ,2014. 12. 31.> ()

< 130 ,2014. 12. 31.>

1 ()

2 () 64 2 8 9

3 () 56 3 , 8
16

< 134 ,2015. 1. 8.> ()

1 ()

2

3 ()

44

" " " "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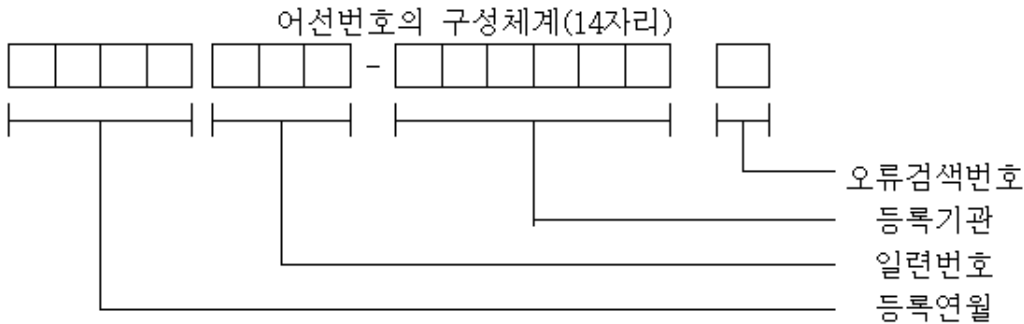
< 217 ,2017. 1. 2.> ()

25	"	"	"	"	"	"	"	"	"
26	"	"	"	"	"	"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40	"	"	"	"	"	"	"	"	"
41	"	"	"	"	"	"	"	"	"
42	"	"	"	"	"	"	"	"	"
43	"	"	"	"	"	"	"	"	"
44	"	"	"	"	"	"	"	"	"
47	"	"	"	"	"	"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48	"	"	"	"	"	"	"	"	"
51	"	"	"	"	"	"	"	"	"
56	"	"	"	"	"	"	"	"	"
58	"	"	"	"	"	"	"	"	"
59	"	"	"	"	"	"	"	"	"
61	"	"	"	"	"	"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62	"	"	"	"	"	"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63	"	"	"	"	"	"	"	"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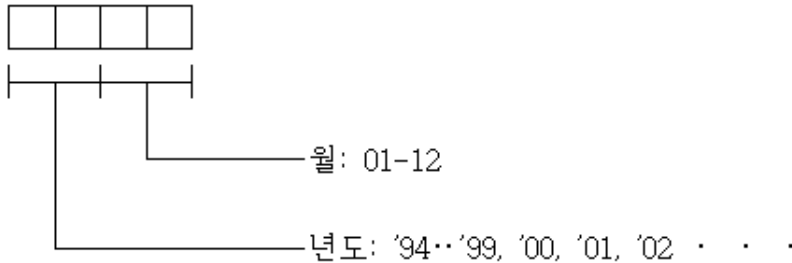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5. 1.>

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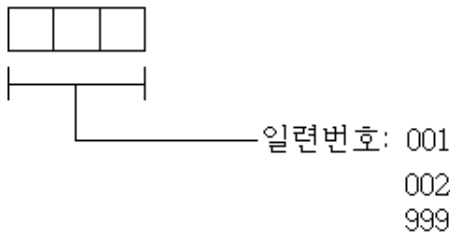
1.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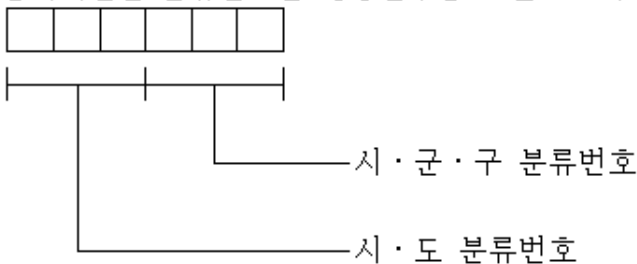
2. 등록연월은 연도 끝 2자리수와 월 2자리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 일련번호는 어선원부에 기재하는 매월별 순서번호에 의하여 매월마다 새로운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번호가 3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3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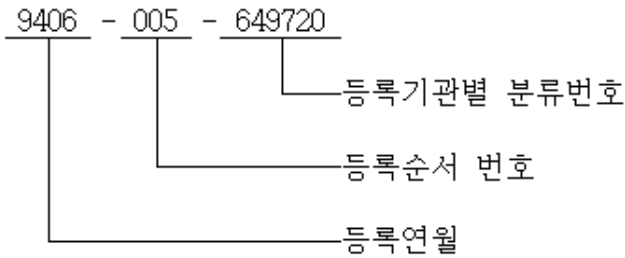
4.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 등록연월, 등록순서 번호,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3자리의 숫자로 만든다.

[예시]



나.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곱한 값이 10을 넘을 경우 그 곱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의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begin{array}{r}
 9406005649720 \\
 \times) 12121212121 \\
 \hline
 9802005248740 \\
 9+8+0+2+0+0+5+2+4+8+7+4+0=49
 \end{array}$$

다.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49 \div 10 = 4$ 나머지 9

라.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 - 9 = 1$ 오류검색번호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09.12.14>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 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해당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척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흡수선	

디프탱크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제1급 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덤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덤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D 또는 2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배의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 방안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5. 1.>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제52조제1항 관련)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3) 선미골재
- 4) 타
- 5) 타두재
- 6) 타심재
-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 1)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및 실린더 블록
- 2) 선내외기(船内外機)
- 3) 선외기(船外機)
- 4)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5)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압력용기
- 7) 열교환기
- 8)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 9)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 10)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커플링,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 11)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 선미관실 장치
- 12)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 13) 아웃드라이버장치
- 14) 러더프로펠러장치
- 15) 워터젯추진장치
- 16) 역량계측장치
- 17) 유량계
- 18) 유가열기

- 19) 원격제어장치
- 20)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 21) 펌프류
- 22) 밸브류
- 23)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

다. 배수설비에 관한 것

- 1) 밀지펌프
- 2) 선외펌프

라.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 1) 유압조타장치
- 2) 닻
- 3) 쇄사슬
- 4) 로프
- 5) 유압펌프
- 6) 유압모터
- 7) 양묘장치
- 8) 계선장치
- 9) 비상예인장치

마. 구명설비에 관한 것

- 1) 구명정
- 2) 구조정
- 3) 구명뗏목지원정
- 4) 구명정, 구조정, 구명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 5) 공기자급식구명정의 공기자급장치
- 6) 구명뗏목
- 7) 진수장치
- 8) 탑승장치
- 9) 보트대밧
- 10) 보트윈치
- 11) 구명부기
- 12) 구명부환(구명줄을 포함한다)
- 13) 구명조끼
- 14)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 15) 방수복
- 16) 보온구

- 17)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 18) 자기점화등
- 19) 탐조등
- 20) 구명조끼 표시등
- 21) 캐노피등
- 22) 수밀전기등
- 23) 구난식량·식수
- 24) 해수탈염장치
- 25)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26) 수압이탈장치
- 27) 위크링크
- 28) 레이더반사기
- 29) 역반사재
- 30) 노출보호복

바. 소방설비에 관한 것

- 1) 소화펌프
- 2)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 3)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
- 4) 소화제
- 5) 소화호스, 노즐
- 6) 소방원장구(개인장구, 호흡구)
- 7) 물분무방사기
- 8)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9) 화재탐지장치(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 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표시반 및 제어반)
- 11) 가연성가스검정기
- 12) 방화용재료
- 13) 방화문
- 14) 자동폐쇄형방화담퍼
- 15) 고속배기장치
- 16) 플레임어레스트

사. 거주설비에 관한 것

- 1) 기계식통풍장치
- 2) 현창

- 3)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 4) 비상조명장치
- 5) 공기식 매트리스

아. 항해용구에 관한 것

- 1)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2)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3) 자기컴퍼스
- 4) 자이로컴퍼스
- 5) 음향측심기
- 6) 선속거리계
- 7) 회두각속도계
- 8) 도선사용사다리
- 9) 엔진텔레그라프
- 10) 재화문개폐표시장치
- 11) 누수검지장치
- 12) 흡수계측장치
- 13)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자.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 1) 크레인
- 2) 하역장치의 부품[데릭붐, 윈치, 와이어로프, 블록, 구즈넥(Goose Neck)브래킷]
- 3)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

차. 전기설비에 관한 것

- 1)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 2)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 3)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 4)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 5)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 6)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 7) 주파수변환장치
- 8) 선박용전선

카. 기타

- 1)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 2)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

- 1) 원동기: 22kW(30PS) 미만의 것
- 2)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 3) 중간축: 직경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 4) 프로펠러축: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것
- 5) 선미관: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
- 6) 프로펠러: 직경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7) 관류(플렉시블 호스 포함): 1류관용 외의 것
- 8) 펌프류: 수동식의 것
- 9) 밸브류: 안전밸브, 선체불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
- 10) 쇠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
- 11)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 가)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 나)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 12) 현창: KS V ISO 1751 C급 제외
- 13)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4)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5)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6)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 17)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8)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 19) 냉동설비(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사용동력이 7.5kW(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

- 1)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

다.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
(다만,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제1호나목의 어선용품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4>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2조제4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어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어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추어 것

다. 누설 시험장

-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어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추어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 1)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 1) 솔 등 뱃목 수세용구
- 2) 용기 분해용공구
-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뱃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칭량 1킬로그램 정도),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 바늘류, 절단기
-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 4) 납땜 가공용구
납땜 인두
- 5) 구멍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펀치 및 타구
-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 7) 젖은 뱃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 온도계, 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배풍기
-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칭량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멍뱃목 또는 팽창식 구멍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 4) 그 밖의 습도계, 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패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 심, 끈, 밧줄류, 접착제, 용제, 도료, 인쇄잉크, 교환용부품 등

4. 자체정비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09.12.14>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확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나) 만재흡수선
디프탱크	다)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된 높이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덤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덤	호스 내 압력 2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압력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

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5. 1.>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나) 및 다)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의 도면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가) 1)의 가)부터 다)까지의 도면

나) 기관실전체장치도

다)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 50kVA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조사양서(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6)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7) 배수량등곡선도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흡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 라) 램프게이트 구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타(舵)구조도
- 바) 축계장치도
- 사)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 아)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차) 하역장치 배치 및 강도계산서(총톤수 300톤 이상인 어선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로 한정한다)
- 카) 전기설비
 -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3) 선등 배치도

2.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승강설비 장력계산서
- 2) 승강설비 배치도와 승강설비 구조도
- 3)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4)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다. 만재흡수선(목재만재흡수선 및 구획만재흡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흡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제2호의 도면 중 해당

도면

나. 만재흡수선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중앙횡단면도
- 3) 배수량등곡선도
- 4) 갑판평면도

다.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 3) 제개구폐쇄장치도
- 4) 선체선도
- 5) 제2호라목에 따른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어선의 선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 3) 재료배치도
-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며,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강도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1)의 일반배치도

나. 내연기관

-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결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

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선내외기(船内外機) 및 선외기(船外機)

- 1) 기관 주요 요목
- 2) 외형도(기관의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
- 3) 거치도
-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라. 보일러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에열기, 보일러 부착품 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 5) 안전밸브의 조립도
-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마. 압력용기

- 1) 전체조립도
-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 3) 안전밸브의 조립도
-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바.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사. 축계장치

-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아.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자. 감속장치
- 1) 조립단면도
 -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차.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카. 워터제트추진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타. 펌프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파.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 하. 관 및 밸브류
-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압력·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거. 원격제어장치
-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너. 유압조타장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목록표
-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더.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의 데빃

-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러. 원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5) 원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머. 구명정 또는 구조정

- 1) 선체선도
- 2) 재료배치도

버. 발전기 또는 전동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회전축상세도
-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서. 변압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어. 배전반 또는 제어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냉동장치

-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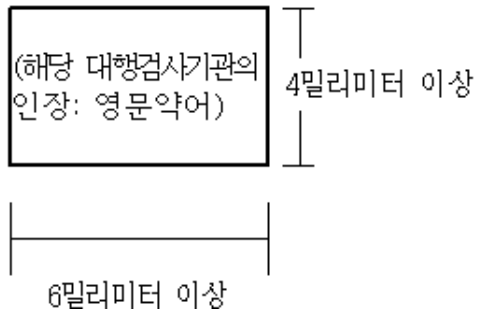
처. 그 밖의 설비

-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8. 5. 1.>

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5. 1.>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하천·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관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행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

- 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착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펌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 7) 워터제트 추진장치 주축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

할 것

- 가) 커플링 볼트를 분해할 것
- 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커버를 떼어낼 것
- 다)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 부분을 개방할 것
- 라) 스러스트 베어링을 개방할 것
- 마)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을 분해할 것(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

한 경우)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착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쥘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 1)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차. 가목 및 라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흡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어로·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 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1의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파랑·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 라.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않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않았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 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기름 등을 제거할 것
-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 자. 해당 어선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할 것
- 차. 해당 어선을 횡경사 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

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어선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2.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5. 1.>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2) 프로펠러축계

-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 마)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3) 보일러

-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관과 관의 두께를 쥘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1) 및 4)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돛, 돛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아.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차.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멍 및 소방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다. 전기설비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09.12.14>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 나.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5.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해상 시운전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3.3.24>

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재료시험 중 재료확인만 해당한다),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3.3.24>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개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3] <신설 2009.12.14>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전기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어로·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구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항해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어선용품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11. 예비검사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52조제3항의 적용기준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로서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2)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18. 5. 1.>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 (제55조제3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 기관실의 전단·후단 격벽 및 해수흡입구(SEA CHEST)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쇄모한도
-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해양수산부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두께측정업체가 두께측정을 실시한 후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 결과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전체 두께측정 부위의 100분의 5 이상을 확인하고 그 중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쇄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쇄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쇄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쇄모한도
------	------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후판상의 중통부재, 디프탱크의 판, 내저판	현측 격벽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나.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웹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다. 작은 골재의 웹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라.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p>비고</p> <p>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p> <p>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p> <p>다.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이 내장재로 견고히 부착 시공되어 부식의 우려가 낮고 내장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에 대한 두께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p>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최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최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최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5] <신설 2009.12.14>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일반배치도
- 2) 외판전개도(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 만재흡수선하의 선체외판
- 2) 시체스트,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
-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 5) 스러스터
- 6) 선미관 베어링 틸새(해수유회) 및 타의 베어링 틸새

나. 선박검사원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원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원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원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와 선박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일반사항
 - 가) 어선 요목
 - 나) 검사 일정
 - 2) 어선 상태
 - 3) 해상 상태
 -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 5) 수중검사장비 명칭
 - 6) 검사 내용
 -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 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8. 5. 1.>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제56조제6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1)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
 - 2)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비자성체 재질의 프로펠러축계
 - 라.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및 제3호카목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에서 정한 값 이내의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2)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에 대한 검사의 준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생략할 수 있다.
 -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5밀리미터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어선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기관계속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어선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어선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어선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어선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어선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어선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 (2) 증기관장치
-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 (4) 예비품
-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가)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 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나)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다)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보기(어선의 추진, 인명과 어선의 안전 및 어선의 용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 (2) 각 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경우 선내 보수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어선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원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 ② 점검 연월일 및 장소
- ③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원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원에 따른 개방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관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증기터빈(주, 보조)

※ 비고: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
-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따른 점검을 시행할 것
- (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검되어 있을 것
-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어선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관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어선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 (1) 우현에서 좌현으로
- (2) 선수에서 선미로
-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의 정기검사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어선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어선임을 반드시 명기한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도입·검사기관 변경·등록기관 변경한 어선과 재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가목·제6호다목·제7호나목 및 제9호나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제50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과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있어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부터 카목(선체외부로 한정한다)까지,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검사준비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거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8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전회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 등을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은 정비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가목 또는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의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개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
-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8년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어선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어선용품(법 제3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은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차.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1)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었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
- 2) 어선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어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어선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 가)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 나)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것

카.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중 제2호가목·라목,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4)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
-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타. 선내외기(신품으로 한정한다) 및 선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 9000시리즈의 인증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파.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외기에 대하여 별표 8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사항 및 별표 9 제1호나목1)·2)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하.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낚

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실린더커버를 떼어내어 확인할 수 있다.

- 1) 어선 소유자가 어선의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수리·정비를 할 것
- 2) 기관에 대한 수리·정비 후 6개월 이내에 어선검사를 신청할 것
- 3) 기관에 대한 수리·정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4) 해당 기관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자 등 인정 가능한 자가 수리·정비를 할 것

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 다목, 라목, 카목(선체 외부에 한정한다), 제2호가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너.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나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가 다음에서 정하는 값 이내의 경우에는 타를 들어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발출(拔出)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 2)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 3)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4) 백베어링: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11호의2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같은 조선소(조선소 명칭 및 건조 장소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같은 내용(배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산정을 위한 시험을 한 결과 선행 호선과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하중량(LWT) 차이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 위치(LCG) 차이
배의 길이(Lf) 50미터 이하	2.0퍼센트 LWT
배의 길이(Lf) 160미터 이상	1.0퍼센트 LWT
배의 길이가 50미터 초과 160미터 미만인 경우 보간법에 따른다.	0.5퍼센트 수선간장(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2) 어선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탑재·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재등록, 용도변경, 도입·차용하거나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는 어선으로서 복원성 승인 후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어선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어선검사증서는 어선이 항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이미 승인받은 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선용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다. 어선용품의 수리(기존 설비 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외2] <신설 2018. 5. 1.>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효력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제5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나.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2호	지정 취소		
3)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3호	지정 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4호	효력 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5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2개월	효력 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3 제2항제6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조 관련)

1. 지정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 1) 창구복포(覆布)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3) 팽창식 구멍땃목
- 4) 구멍부환
- 5) 구멍조끼
- 6) 구멍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
- 7) 로켓낙하산신호
- 8) 신호홍염
- 9) 발연부신호
- 10) 자기발연신호
- 11) 자기점화등
- 12)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13) 소화펌프
- 14) 소화기
- 15) 소화제
- 16)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17) 탄산가스용기
- 18) 매니폴드
- 19) 제어밸브
- 20) 선동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 21) 음향신호장치(기적·호종 및 동라 등)
- 22)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 팽창식 구멍땃목

- 3) 팽창식 구멍부기
- 4) 강하식 탑승장치
- 5) 소화기

라.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 1) 어선의 건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건조에 필요한 재료, 부품의 보관시설 및 건조된 어선을 보관하기 위한 건조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건조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현도(賢圖) 작업 설비
- (2) 형틀(Mould) 건조설비
-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가) 조합대(調合臺)
 - (나) 교반기(攪拌機)
 - (다) 계량(計量)기구
 - (라) 냉장설비 등
- (4)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설비
- (5) 적층(積層) 작업에 필요한 설비
- (6) 강화플라스틱제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절단기
 - (나) 절삭기
 - (다) 샌딩기 등
-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건조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현도작업 설비
- (2) 알루미늄합금의 판재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설비
 - (나) 기계톱 그 밖에 절단기계
 - (다) 곡면 가공 기계
 - (라) 선반 그 밖에 공작기계

(마) 조립 및 진수설비

- 용접기
- 용접용 재료의 건조(乾燥)설비
- 리벳이음 설비
- 치구(治具)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등
- 진수대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건조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유리함유율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설비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선체강도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낙하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변형측정장치

(4)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정량분석장치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용접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표면 온도계

(나) 용접용 전류계

(다) 수분 측정장치

(4)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1)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건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건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건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의 건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건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건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의 설계 및 건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지정건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어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제작준비에 필요한 설비

(1) 합사기(合絲機)

(2) 연사기(撚絲機)

- (3) 정경기(整經機) 등
- 나) 직기(織機) 그 밖에 제직(製織) 설비
- 다)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재의 건조설비
 - (2) 목공기계
 - (3) 주물모래 처리장치
 - (4) 조형(造型) 기계
 - (5) 주형(鑄型) 건조로
 - (6) 용선로(鑄銑爐) 그 밖에 용해로 등
- 나) 가열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용 가열로
 - (2) 열처리로
 - (3) 침탄로(浸炭爐) 또는 질화로(窒化爐)
 - (4) 열박음에 필요한 설비 등
- 다) 소성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기계
 - (2) 프레스머신
 - (3) 벤딩머신 등
- 라) 절삭작업 및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가스절단기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 마)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및 밀링머신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旋盤)
 - (4) 드릴링머신
 - (5)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6) 호빙머신(Hobbing machine)
 - (7) 연삭반(研削盤) 등
- 바) 세정작업 설비
- 사)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땀목
- 가) 고무 콤파운드(compoun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절단기
 - (2) 고무혼합설비
 - (3) 예열용오븐
 - (4) 스트레이너(Strainer) 등
- 나) 고무풀 제조 설비
- 다) 포지에 고무를 입히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 (2) 캘린더롤러(Calendar roller)
- 라) 가황(加黃)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마) 특수부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부품 연마장치
 - (2) 금속부품 세정장치
 - (3) 금속부품 건조장치
 - (4)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 (5) 고온 프레스
- 바) 별표 4 제1호의 시설
- 사)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봉설비
- 나) 부력재 가공설비
- 다) 팽창식 구멍조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 등
- 가) 화약의 배합작업에 필요한 설비
- 나) 화약의 성형(成型) 작업 또는 충전(充填)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초음파세척기
 - (2) 선반
 - (3) 드릴링머신
 - (4) 연마기(研磨機)
 - (5) 컴프레서

나)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7) 소화펌프

가) 구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공기계
- (2) 주물모래 처리장치
- (3) 주형(鑄型) 건조로
- (4) 용선로(鑄鐵爐) 그 밖에 용해로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
- (4) 밀링머신
- (5) 드릴링머신
- (6) 연삭반
- (7) 호빙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8) 소화기

가) 소화기의 몸체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롤러머신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나) 소화기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
- (2) 형삭반
- (3) 밀링머신
- (4) 드릴링머신
- (5) 호빙머신
- (6) 쇠탄기계
- (7) 프레스머신
- (8) 호스프레스머신
- (9) 공기압축기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9) 소화제

가) 표준(標準)체

나) 파쇄기

다) 믹싱설비

라) 제조설비

마) 그 밖에 소화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0)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소화호스와 연결구의 압착설비 등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

비

11) 탄산가스용기

가) 성형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쇠뚫기

(2) 고주파가열로

(3) 저부 및 두부성형기

(4) 네크절단기

(5) 저부압착용 프레스

나) 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노멀라이징 설비

(2) 퀴칭 설비

(3) 템퍼링설비

다) 나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리밍머신

(4) 탭핑머신

마) 표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자동각인기계 및 레이저각인기계

(2) 내부쇼트머신

(3) 외부쇼트머신

(4) 분체도장설비

바)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2) 매니폴드

가) 절단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산소절단기

- (2) 절단기
- (3) 선반
- (4) 드릴링머신
- 나)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동아크용접기
 - (2) 탄산가스용접기
 - (3) 티그(TIG)용접기
 - (4) 용접용롤러
- 다) 조립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체크밸브 조립기계
 - (2) 램핑머신
- 라) 그 밖에 매니폴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3) 제어밸브
 - 가)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나) 그 밖에 제어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소성가공에 필요한 설비
 - 나) 절단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주형건조로
 - (2) 용해로
 - (3) 주물모래처리장치
 -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가) 세척설비

- (1) 진공건조기
- (2) 초음파세척기

나) 절삭 및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랩핑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5) 드릴링머신
- (6) 공기압축기
- (7) UV코팅기
- (8) 봉재틀
- (9) 에어프레스
- (10) 스웨이징(Swaging) 머신
- (11) 인쇄기

다) 그 밖에 자장식 호흡구 및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1) 창구복포

- 가) 연사의 연수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포지의 외관검사에 필요한 설비
- 다) 포지의 물성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질량측정기
 - (3) 향온향습조

라) 그 밖에 창구복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정량분석장치
 - (4) 주물모래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X-선 검사설비
 - (2) 자기탐상장치
 - (3) 초음파탐상장치
 - (4) 침투탐상장치

- 가)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유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다) 육상시운전을 위한 동력계, 진동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뿔목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점도계, 고무경도계, 인장시험기, 내한성시험기 및 열노화시험기 그 밖에 고무컴파운드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2) 포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박리시험기 그 밖에 고무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고무포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기밀시험기
 - (2) 내유시험기
 - (3) 수압시험기
 - (4) 열노화시험기
 - (5) 내후성시험기
 - (6) 내한성시험기
- 다) 부품 및 부속품류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소금물 분무시험기
 - (3) 실린더 봉판의 기밀시험장치
- 라) 누출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충전장치
 - (2) 압력계
 - (3) 기압계 및 온도계
- 마) 높이 18미터 이상의 투하팽창시험설비
- 바)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수조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내화시험기
 - (2) 낙하시험수조

- (3) 부력시험수조
 - 다) 저울
 - 라) 그 밖에 구멍부환 또는 구멍조끼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5)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정량분석장치
 - (2) 정성분석장치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내식시험 설비
 - 마) 그 밖에 구멍출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등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안전장치(동판 등)의 작동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검사설비
- 7) 소화기
 - 가) 수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검사설비
- 8) 소화제
 - 가) 질량측정설비
 - 나) 항온수조
 - 다) 온도계, 습도계
 - 라) 내압시험기, 비중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검사 설비
- 9)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10) 탄산가스용기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두께측정 설비

- 나) 내압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1) 매니폴드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매니폴드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2) 제어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제어밸브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3) 소화펌프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조직의 검사 설비
 - (2) 정량분석장치
 - (3)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수압시험 설비
 - 다) 성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재료시험 설비
 - 나) 내식시험 설비
 - 다) 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광도측정장치
 - (2) 배광측정장치
 - (3) 방수시험장치
 - (4) 진동시험장치
 - (5) 절연저항시험장치
 - 라)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무향실
- (2) 음압레벨측정계
- (3) 3분의 1 옥타브 필터
- (4) 튜너 밴드패스 필터
- (5) 음압레벨기록기
- (6) 보정계

다)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안전부 충격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나) 수압시험기

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공기압시험기
- (2) 가용합금 파열온도 측정기
- (3) 안전부 기밀시험기
- (4) 배기밸브 기밀시험기
- (5) 배기밸브 저항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6) 소음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7) 나사링게이지
- (8) 나사플러그게이지
- (9) 유량측정기
- (10) 내열시험기
- (11) 내한시험기
- (12) 투영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3) 경보(휘슬)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4) By-pass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라) 그 밖에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차.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어선용품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정비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밸브 및 밸브시트의 가공기구

나) 삭제 <2011.3.30>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2) 팽창식 구멍뿔목

가) 별표 4 제3호의 기구 및 비품류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3) 팽창식 구멍부기, 강하식 탑승장치

가) 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솔 그 밖에 세정기구

(2) 실린더 분리용 공구

(3) 충기장치 분해용 공구

(4) 휴대용등 또는 회중전등

나) 보수 또는 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접시저울, 롤러 그 밖에 접착가공에 필요한 공구

(2) 공업용 재봉틀 그 밖에 봉제용구

(3) 로프 가공용구 및 납땀가공용구

다) 그 밖에 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설

비

4) 소화기

가) 소화기실린더 세정 설비

나) 소화기실린더 압력시험 설비

다) 각종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

라) 봉관 그 밖에 소화기정비에 필요한 부품저장 및 소화시험설비

마)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다만, (1) 및 (2)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탐상 및 초음파탐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자기탐상설비

(2) 초음파탐상설비

(3) 침투탐상설비

나)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수압시험 설비

(2) 유압시험 설비

- 다) 육상시운전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 2) 팽창식 구멍뿔목, 팽창식 구멍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
 - 가) 별표 4 제3호다목의 검사를 위한 기구
 -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 3) 소화기
 - 가) 충전 또는 잔량 측정 설비
 - 나) 포소화제(기계포에 한정한다) 농도 측정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 시험 및 검사 설비
-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멍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 마. 삭제 <2011.3.30>
- 바.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 1) 어선용품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유지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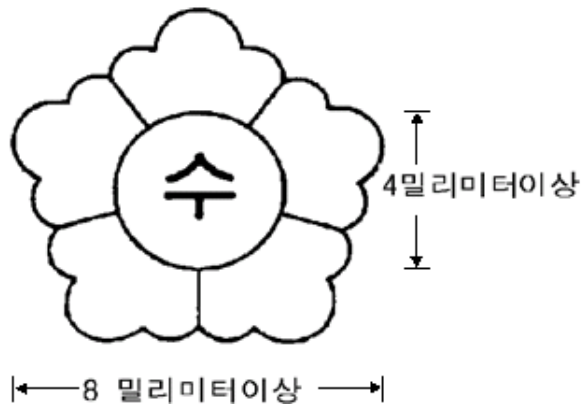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8. 5. 1.>

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신설 2018. 5. 1.>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2개월	효력 정지 3개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효력 정지 1개월	효력 정지 3개월	효력 정지 6개월
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6조	효력	효력	효력

「선박안전법」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제1항제7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	--------	-----------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8. 5. 1.>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제61조제2항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등

-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금속구조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목 구조부		8
와 이 어 로 프		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 \text{ (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펙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_1 \cdot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₁, C₂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 (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 ₁	1.35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0	1.10
C ₂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1	110	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

름(미터)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sum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um C_2 \cdot W$ 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뿔에 대한 $C_2 \cdot W$ 값의 합

O' 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_2 및 W 는 각각 (1)에 따른 C_2 및 W 와 같다.

- (3) 데릭뿔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뿔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_1 을 1.0으로 할 것

$$\alpha = \frac{h}{h-h'}$$

이 식에서

h' 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 는 제2호에 따른 h 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곱할 수 있다.

$$\beta = 10 \frac{h^3}{d_m^3} \cdot \sum R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sum R$ 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sum R = (d_s^2 \cdot a^2) / (\ell_0 \cdot \ell_s^2)$$

이 식에서

d_s 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ℓ_s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ℓ_0 는 ℓ_s 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곱한 길이(미터)

$$\gamma = 0.045d_s + 0.26 \text{ (미터)}$$

a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미터)

-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곱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뿔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sum R$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곱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붐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배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이 0.6 이상인 경우 0.7

r이 0.6 미만인 경우 $1 - 0.5 r$

이 식에서

r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2)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가 0.3 이상인 경우 0.35

r'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 \cdot r'^2$

이 식에서

r'는 포틀단면의 깊이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85 \frac{h'}{h - h'} W \cdot O \quad (\text{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와 같다.

h'는 3)가) (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붐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_m + 2.5(\text{밀리미터})$$

이 식에서

d_m 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른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 (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

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r'/C'$$

이 식에서

r'는 3)다) (2)에 따른 r'와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 V 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부표 1 또는 부표 3에 따른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8 \frac{d_s^2 a}{\ell_o \ell_s} \delta \cdot g \text{ (KN)}$$

이 식에서

d_s , a , ℓ_o 및 ℓ_s 는 각각 3)나)에 따른 d_s , a , ℓ_o 및 ℓ_s 와 같다. 다만, a 는 δ 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delta = C_s \frac{h}{h-h'} \cdot \frac{W \cdot O}{\frac{I}{h^2} + 7.32h\Sigma R}$$

이 식에서

I 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공센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 O 및 ΣR 는 각각 3)에 따른 W , O 및 ΣR 와 같다. 다만, ΣR 값의 계산에 있어서 a 는 데릭봄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_s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 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이하	3	4	5	6	7	8	9	10	15이상
C_s	2.64	2.52	2.46	2.41	2.38	2.35	2.33	2.31	2.29	2.22

다) 스테이션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 아이는 스테이션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봄

가) 데릭봄의 지지부는 데릭봄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봄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봄”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1) 데릭봄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_B P \ell^2 \text{ (네제공센터미터)}$$

이 식에서

C_B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 은 데릭봄의 유효길이(미터)

P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P = (a_1 \frac{l}{h-h'} + f) \cdot W \quad (\text{톤})$$

이 식에서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W 및 h'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와 같다.

a₁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이 상 50이 하
a ₁	1.28	1.23	1.20	1.18	1.16	1.15	1.14	1.13	1.13	1.10

f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몸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f	1.102	0.570	0.392	0.304	0.251	0.216	0.192	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pi/8) \cdot (d_0 - t)^3 \cdot t \quad (\tex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₀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몸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몸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몸의 상단부쇠붙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몸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_{or} / P \geq 4$$

이 식에서

P_{or}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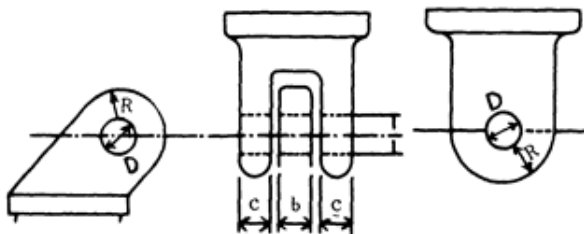
11) 쇠붙이

가)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뿔”, KS V 2212 “하역토펅 브래킷” 및 KS V 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뿔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egin{aligned} b &\geq e_1 \sqrt{P} \\ d &\geq e_1 \sqrt{P} \\ c &\geq 0.55 e_1 \sqrt{P} \\ 2 &\geq D-d \geq 1 \\ R &\leq D \end{aligne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e_1 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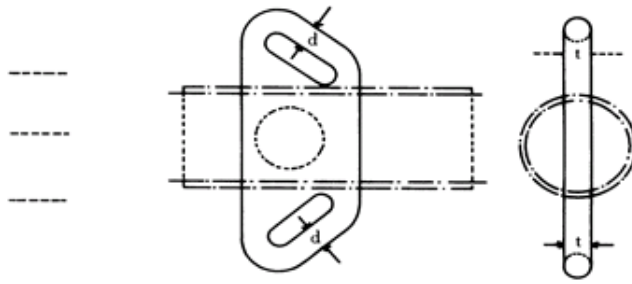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2)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begin{aligned} d &\geq e_2 \sqrt{T} \\ t &\geq e_2 \sqrt{T} \end{aligned}$$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 a_1 \cdot a_2 \cdot W$ (토펙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 \lambda \cdot W$ (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_1 는 10)나) (1)에 따른 a_1 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l/(h-h')$		2.0	1.9	1.8	1.7	1.6	1.5	1.4	1.3	1.2
a_2	W가 10톤 이하인 경우	1.99	1.90	1.81	1.73	1.65	1.57	1.49	1.42	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	1.73	1.65	1.57	1.49	1.41	1.33	1.26	1.19

비고

1. l 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2. h' 는 3)가) (3)에 따른 h' 와 같다.
3.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λ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뿔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 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λ	2.10	1.58	1.40	1.31	1.26	1.23	1.20	1.18

(나) $R \g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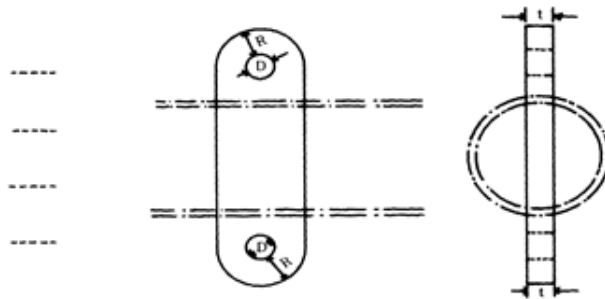
$$t \geq e_1 \sqrt{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 \cdot (R - D/2) \geq e_2 \cdot 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_1 은 (1)에 따른 e_1 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뿔,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하중	시험하중
20톤 미만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뿔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마. 하중시험 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봄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봄이 지지부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가. 윈치(토폽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로 한정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윈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체 인		4.5
와이어로프		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7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 분		시 험 하 중
단활차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원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외2] <신설 2017. 6. 28.>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법 제31조의4 제1항제3호	등록취소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	등록취소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18. 5.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73조의2 관련)

1.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건조허가	개조허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000	1,000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1,000	1,000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2,000	1,000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1,000	1,000
비고		
1.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3,000

3. 지정사업장의 지정 수수료

(단위: 원)

구분	수수료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	100,000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	100,000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	100,000

비고

지정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정대상물건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4.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 []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강 []목 []FRP []그 밖의 재질()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자기부담	만원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택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키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행·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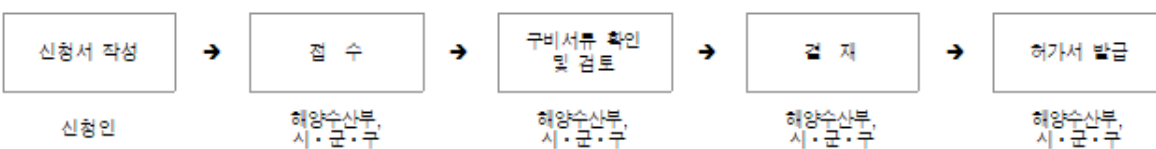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용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택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용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	------	------	------------------------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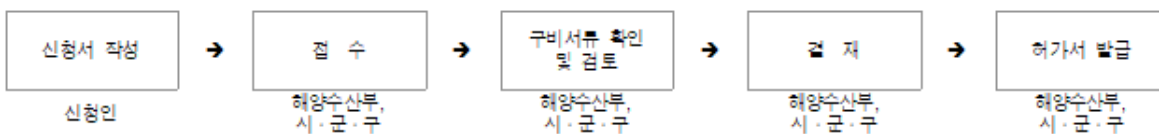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함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군·구 : 3일
------	------	------	--------------------------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	------	-----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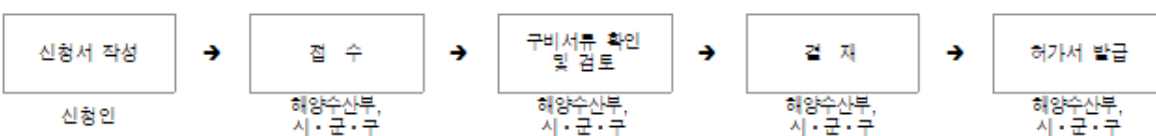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피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의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층 수	톤	선체재질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건조장소				
허가조건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개조장소							
개조사유							
허가조건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0.30>

제 호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일 자
구 분	제 호	년 월 일
변경사항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서식 7] 삭제 <1998.1.24>
- [서식 8] 삭제 <1999.5.17>
- [서식 9] 삭제 <1999.5.17>
- [서식 10] 삭제 <1999.5.17>
- [서식 11] 삭제 <1999.5.17>
- [서식 12] 삭제 <1999.5.17>
- [서식 13] 삭제 <1999.5.17>
- [서식 14] 삭제 <1999.5.17>
- [서식 15] 삭제 <1999.5.17>
- [서식 16] 삭제 <1999.5.17>
- [서식 17] 삭제 <1999.5.17>
- [서식 18] 삭제 <1999.5.17>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9.12.1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 총톤수 [] 측정 [] 개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정요청일자 +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측정(개축)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 동력 [] 무동력	어선의 명칭 (원명:)	
	선 적 항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길이:	선체재질 []강 []목 []FRP []그 밖의 재질()	
	선 적 항	조 선 자	
측정(개축)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측정(개축)을 받으려 하는 장소			
신청사유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첨부서류	1. 도면(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형 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삭제 <2014.12.31.> 사.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대항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택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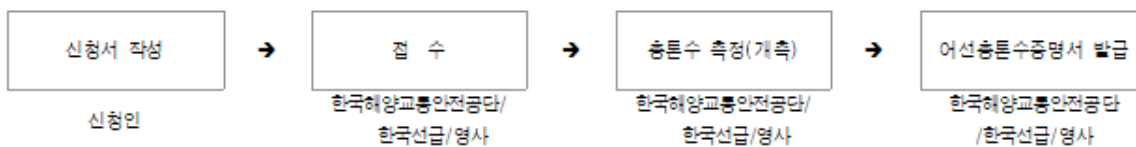
(뒤 쪽)

유의사항

○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 시기

- 어선의 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
-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
-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려 하는 때
-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총 톤 수	톤
호출부호 또는 명칭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m ³
어선의 종류		상갑판아래의 용적	m ³
어선의 명칭		상갑판위의 용적	합계용적 m ³
선 적 항			선수루의 용적 m ³
선체재질			선교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m ³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갑판실의 용적 m ³
추진기	추진기 대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조선지		제외장소의 용적	합계용적 m ³
조선자			선수루의 용적 m ³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교루의 용적 m ³
주요치수	길이		선미루의 용적 m ³
	너비		갑판실의 용적 m ³
	깊이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대한민국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0.>

국제총톤수 []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정요청일자 +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총 톤 수	톤	국제총톤수 톤
측정(개측)을 받으려 하는 일자		년 월 일	
측정(개측)을 받으려 하는 장소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형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 12. 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총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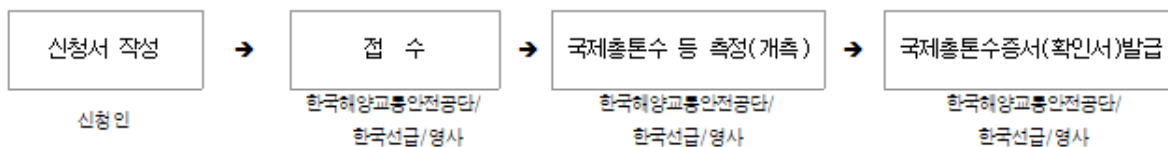
○ 벌칙규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통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통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통수증서를 발급받아 배안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통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제 - 호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 [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 [협약부속서 제2규칙(3)] Breadth [Regulation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 [Regulation2(3)]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 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 톤 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름용지(1종) 120g/㎡]

(뒤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 치 Location	길 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 치 Location	길 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 (협약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 [협약부속서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합니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흘수 [협약부속서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 고 REMARK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국제톤수확인서
TONNAGE CERTIFICATE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Date

(주) 응골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 [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 [협약부속서 제2규칙(3)] Breadth [Regulation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부속서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 [Regulation2(3)]

선박의 톤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국제 총 톤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국제 총 톤수 _____ 순 톤 수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인식용지(특급) 120g/㎡]

(뒤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 치 Location	길 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 치 Location	길 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그 밖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 [협약부속서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 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합니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흘수 [협약부속서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 고 REMARK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8. 20.>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정요청일자 +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진수면월일	년 월 일
재화중량톤수 또는 계획톤수		톤	
측정(개측)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측정(개측)을 받으려는 장소			

「어선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귀하
 대한민국영사

첨부서류	1. 일반바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 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	수수로 대항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로 기준에 따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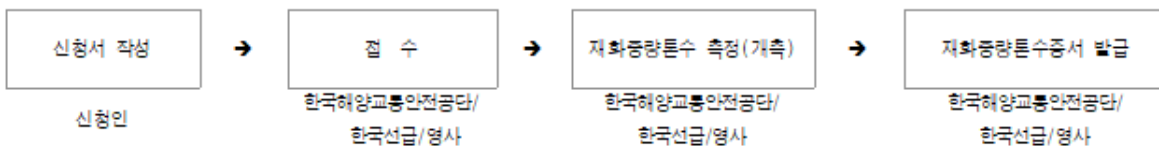
210mm×297mm[택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재화중량률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8. 20.>

재 화중량톤수증서 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

증서번호 : 제 - 호
Certificate No. : 제 - 호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연월일(주)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개조를 한 일자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주요 치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Upper Deck	선박의 중앙에서 기준출수선까지의 형깊이 Moulded depth amid ships to the Summer Load Line

재 화중량톤수 DEADWEIGHT TONNAGE

국제 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 톤 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 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5. 1.>

[어선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어업 []변경허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동력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건조 [] 수입 [] 그 밖의 사유()
-----------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매매·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매매(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210mm×297mm [백상지 80g/㎡]

(뒤쪽)

<p>첨부서류</p>	<p>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p> <p>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나.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권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양어업, 건양어업, 물양어업, 선인양어업, 송양류어업, 안양양어업, 장양류어업, 지인양어업 또는 해산양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p>	<p>수수료 조례에 따름</p>
-------------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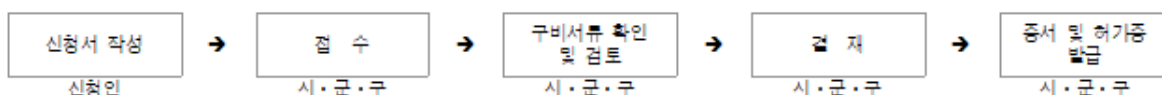
-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2.6.7>

(앞쪽)

어 선 원 부

조 선 지		조 선 자	
진수연월일		원 명	
어선번호			
호출부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선체재질			
범선의 범장			
주요 치수 (m)	길 이		
	너 비		
	깊 이		
총톤수(톤)			
용적 (m ³)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상갑판아래의 용적		
	상갑판위의 용적		
	선수투의 용적		
	선교투의 용적		
	선미투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선수투의 용적		
	선교투의 용적		
	선미투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추진기의 종류와 수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법인등록번호·주소)			
등록 및 변경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변경등록사유 등 그 밖의 기재사항			

210mm×297mm [택상지(1종) 80g/㎡]

(뒤쪽)

공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저당권 설정등록 등			
순 위	구 분	사 항	등록일자

[서식 29] 삭제 <1999.5.17>

[서식 30] 삭제 <1999.5.17>

[별지 제31호 서식] [삭제 <2012.6.7>](#)

[서식 32] 삭제 <1999.5.17>

[별지 제33호 서식] [삭제 <2012.6.7>](#)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동력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법적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항방불령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해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등록말소확인서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FISHING VESSEL'S NATIONALITY			
소유자 (Owner)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주소 (Address)		
어선번호 (Distinctive Number)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의 종류 (Kind of Ship)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말소일자 (Date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말소사유 (Reas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p>「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above described fishing vessel was canceled from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s Act.</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Official Position)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직인 </div> </div>			

210mm×297mm[백상지 (15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쪽)

제 호

선박국적증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총 톤 수	톤
어선의 명칭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호출부호 또는 명칭		상갑판 아래의 용적	㎡
어선의 종류		상갑판 위의 용적	㎡
선체재질		선수투의 용적	㎡
선 적 항		선교투의 용적	㎡
법선의 범장		선미투의 용적	㎡
추진기관	기관 대	갑판실의 용적	㎡
추진기	추진기 기	그 밖의 장소의 용적	㎡
조선지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조선자		선수투의 용적	㎡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교투의 용적	㎡
주요 치수	길이	㎡	선미투의 용적
	너비	㎡	갑판실의 용적
	깊이	㎡	그 밖의 장소의 용적

위의 사항은 모두 정확하며, 이 선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어 유 자				
성 명 (표 인 명)	생년월일 (표 인 생년월일 계좌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쪽)

제 호

선 적 증 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주요치수	길 이 m
어선의 명칭			너 비 m
어선의 종류			깊 이 m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추진기관	기관 대		
조 선 자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6. 28.>

(앞쪽)

제 호

등록필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주요 치수	길이	m
어선의 명칭		너비	m
어선의 종류		깊이	m
선적항	총톤수		톤
조선자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어 유 자				
성명 (표인명)	생년월일 (표인등록번호)	주소	지분	비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0.30>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원증서명	원증서번호	제 호
	원증서발급관청	원증서발급일자	년 월 일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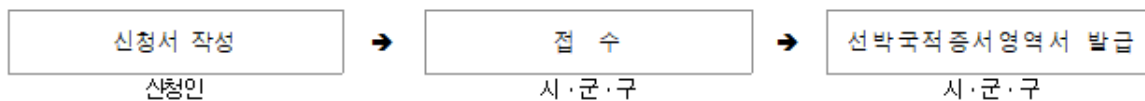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어선의 국제할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의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6.7>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_____

Owners	Name (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cubic meters	
Name of Vessel				
Signal Letters		Under the Upper Deck	cubic meters	
Kind of Vessel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Material of Hull		deck	cubic meters	
Port of Registry		Forecastle	cubic meters	
Riggings (If a Sailing Vessel)		Bridge	cubic meters	
Type and Number of Engines		Poop	cubic meters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Deck Houses	cubic meters	
Where Built		Other Spaces	cubic meters	
Name of Builders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cubic meters	
Date of Launch		Forecastle	cubic meters	
Main Dimension	Length	meters	Bridge	cubic meters
	Breadth	meters	Poop	cubic meters
	Depth	meters	Deck Houses	cubic meters
Gross Tonnage		ton	Other Spaces	cubic meters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

REPUBLIC OF KOREA

직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

The day of , .

(Signature)
(Official Position)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검 요청일자+25일	
검사종류	[] 최초의 정기검사 [] 제2종증간검사	[] 정기검사 [] 임시검사	[] 제1종증간검사 [] 임시항행검사	[] 특별검사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어선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수검요청일자		수검장소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주)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어선내역	선적항		선종 []가선 []범선 []부선 []그 밖의 선종	
	선질 []강 []목 []FRP []그 밖의 선질		어업의 종류	
	총톤수		배의 길이 미터	
	추진기관 [kW] [PS] [대]		무선설비	
	최대승선인원 명(어선원: 명, 어선원 외의 자: 명)			
하역장치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경: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형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2. 해당 어선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형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 또는 확인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어선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합니다) 5. 어선의 운항계획서(일시항형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7.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p>수수료</p> <p>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p>
------	--	--

유의사항

□ 어선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최초로 항형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특별검사: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일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일시항형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일시로 항형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때 행하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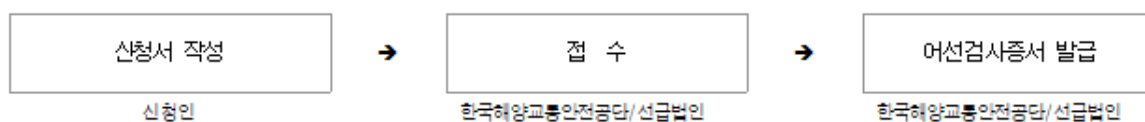
□ 어선검사 면제대상어선

1. 총톤수 6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유의사항

- 정기검사는 해당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8. 20.>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선적항			선질	
	총톤수			어업의 종류	
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 국 선 급 회 장

첨부서류	1.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저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어선검사증서 사본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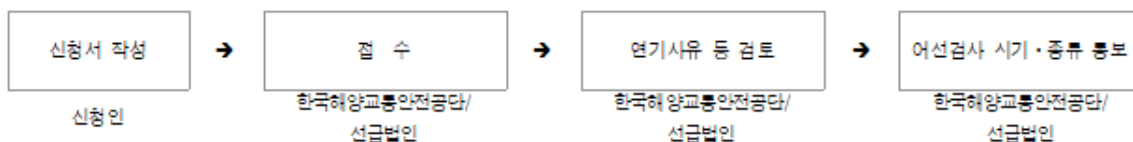
□ 중간검사 연기신청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8. 20.>

계선사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계선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계선기간			
계선장소			
수검예정일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의 어선에 대하여 계선하기 위해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건조기간*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건조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건조어선 내역	건조번호	선 적 항	
	어선의 종류 []동력 []무동력	선 질 []강 []목 []FRP []그 밖의 선질()	
	어업의 종류	총 톤 수 톤	
	배의 길이 미터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요청내역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수검장소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항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나.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항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대항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택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건조검사 대상 어선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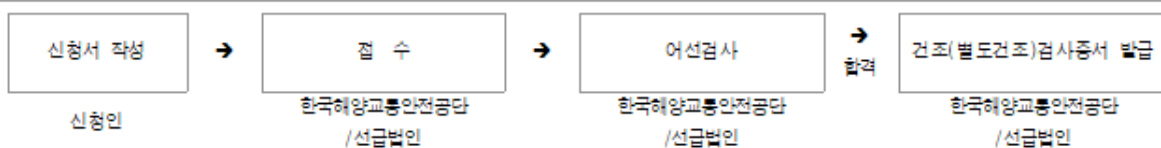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자출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검요청일자 + 2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 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어선용품의 내용

품 명	규 격	형 식	수 량	제조번호	비 고

요청 내역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수검장소				
	신청구분	[]	제조	[]	개조	[]	수리·정비	[]	수입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용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형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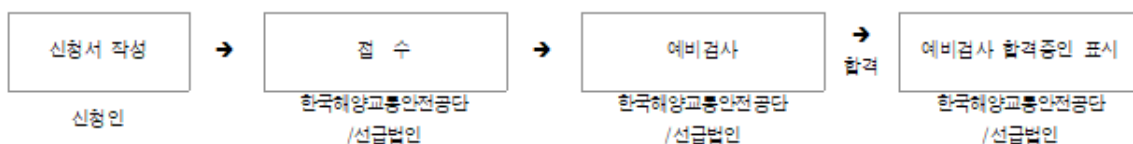
유의사항

□ **예비검사대상: 선척·기관·배수 등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어선용품**

□ **그 밖의 유의사항**

-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개조·수리·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평창식 구명설비의 수리·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평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평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내역	소재지		
	면적 (㎡)		
	인원	정비기술자: 명,	작업원: 명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창식 구멍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명세서 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평항식 구명설비의 종류

- 평항식 구명뗏목
- 평항식 구명부기
- 평항식 구명조끼
- 평항형(복합형) 구조정
- 강하식 탈승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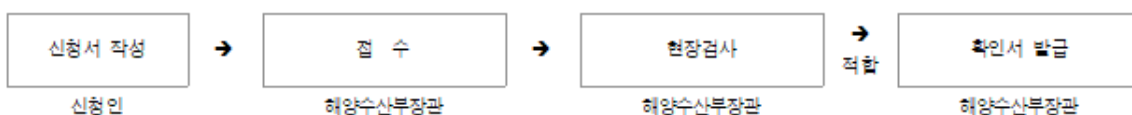
□ 정비시설 등의 기준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품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력: 평항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사업자	성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설의 소재지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210mm×297mm[보름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8. 20.>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건조자 Builder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주 소 Address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건조번호 Building No.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질 Ship Material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계획총톤수 Desing Gross Tonnage	톤 tons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 m, Breadth : m, Depth m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킬로와트(kW)] [마력(PS)] Type Output Nos.			
비 고 Remarks				

「어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9. 8. 20.>

도면승인(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도면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정기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중간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임시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특별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예비검사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만재출수선 관련 도면 <input type="checkbox"/> 복원성 관련 도면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송:)	
어 선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또는 건조번호	
	어업의 종류	총 톤 수	
	배의 길이	선 질	
어선용품	품 명	규 격	
	형 식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택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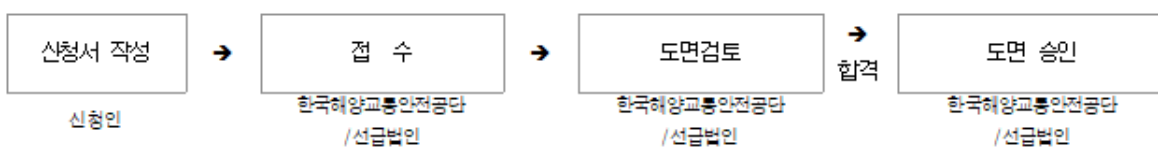
(뒤쪽)

유의사항

□ 도면승인 신청

-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어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합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국문 (법인명)	전 화	
	영문	팩 스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받는 경우에 적으 십시오)	성 명 국문 (법인명)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형식승인 대상물건	종 명		
	규 격		
	형 식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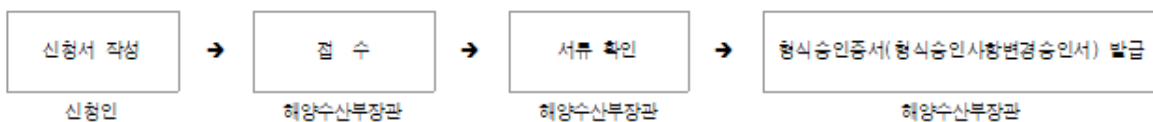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택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p>1. 형식승인신청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 <p>2.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내용을 적는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p>수수료</p> <p>「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름</p>
------	---	--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급번호: 제 _____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주소 Address	
형식승인 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품명 Name of Articles	
	규격 Size	
	형식 Type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비고 Remarks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COLREG, IMO Res., LSA Code)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보편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8. 20.>

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검정요청일자 + 5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 조 자	성명(법인명)
	주소

형식승인대상물건

형식승인증서번호, 형식승인일자	품 명	규 격	형 식	수 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정요청일			검정장소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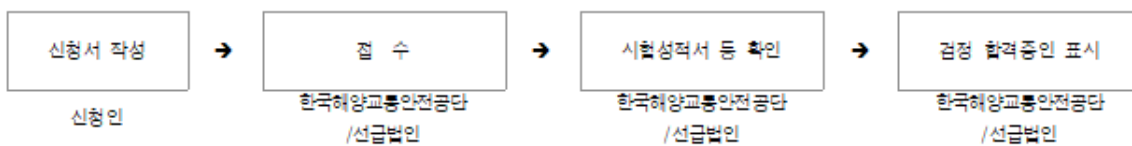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형식승인대상물건에 표시해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형식승인증서 번호와 형식승인 일자
 -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처리절차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2012.6.7>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3.3.24>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제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주소 Address	
형식승인 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품명 Name of Articles	
	규격 Size	
	형식 Type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변경사항 Content Changed	변경전 Before	변경후 After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보존용지(1층) 22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신설 2018. 5. 1.>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	
시험을 하려는 항목 종전에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정조건 변경 [] 시험항목 변경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택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력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입차사유 2) 입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입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3서식] <신설 2018. 5. 1.>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CERTIFICATE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발급번호: 제 _____ 호
Issuing No.: 제 _____ 호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ificate No.: 제 _____ 호

지정기관 Type-Approval Testing Lab.	상호명(법인명) (Company)
	대표자 (Name)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시험항목 Testing Items	
비고 Remarks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laboratory is designated a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5.2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택상지 15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4서식] <신설 2018. 5. 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홈페이지)		
인정내용 (시험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 거나 시험항목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 에 의뢰하는 내용)		의뢰(임차) 기관			
		시험항목			
		시험설비			
		시험능력			
		기 타			
신청사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택상지 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5서식] <신설 2018. 5. 1.>

지정기준 인정서
CERTIFICATE OF EXTERNAL COMMISSIONS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제 호 :

Certificate No. :

신청인 Applicant	상호명(법인명)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대표자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승인사항 Approval	설비 임차 또는 의뢰 시험기관 Testing Lab.	
	시험기관 주소 Testing Lab. Address	
	시험항목 등 Testing Items	
	의뢰시험 내용 또는 이용 설비 Contents(Equip.)	
비 고 Remarks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of external commissions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15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 청 인	성 명 국문 (법인명)	전 화		
	영문	팩 스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국문			
	영문			
사 업 장 주 소				
지정대상	형식승인증서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건조, []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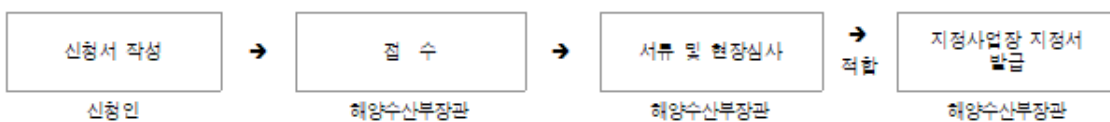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p>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p> <p>가.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과정 4) 품질관리 5) 시험과 검사체계 <p>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p>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p> <p>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p> <p>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p>	<p>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3호에 따른</p>
------	--	--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 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

발급번호: 제 _____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ificate No.:

사업자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	--

지정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품명 Name of Articles	규격 Size	형식 Type

비고 Remarks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보존용지(1층)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9. 8. 20.>

확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확인요청일자 +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지정대상	형식승인증서번호, 지정사업장 지정 번호 및 일자		
	품명	수량	
	규격	건조·제조 (정비)번호	
	형식	건조·제조 (정비)일자	
확인	요청일자	년 월 일	확인장소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대상물건의 ([]건조, []제조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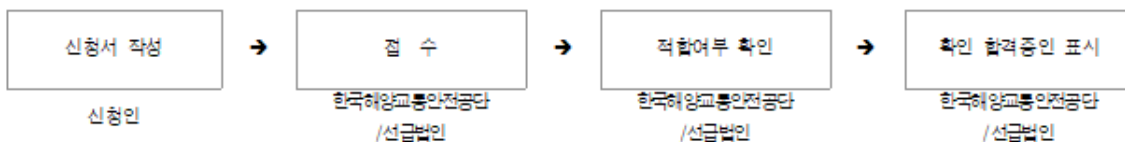
□ 확인대상

- 건조·제조·정비 확인대상 품목(「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1항을 참조하십시오)

□ 지정대상물건에 표시해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건조일자·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 건조번호·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8. 5. 1.>

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 · MAINTENANCE) APPROVED USE**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사업자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형식승인 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품 명 Articles	규 격 Size	형 식 Type	수 량 Quantity	건조·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비 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0-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지정사업장의 장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직인

210mm×297mm[브라운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한하중 등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종류·위치 및 번호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 (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시험하중 (톤)	제한하중 (톤)	제한각도 (제한반경)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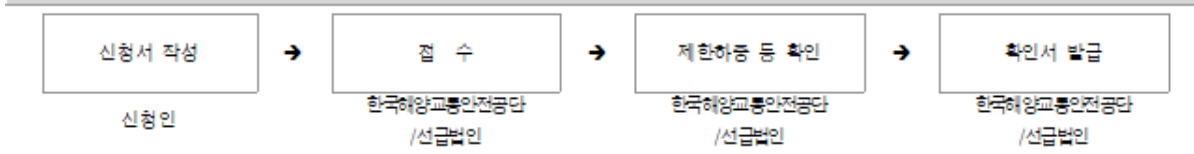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 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9. 8. 20.>

제 호

제한하중등 확인증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종류·위치 및 번호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 (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시험하중 (톤)	제한하중 (톤)	제한각도 (제한반경)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선 적 항	

(2/3)

(1)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는 제외합니다)의 검사 기록

위치 번호	제한하중등 지정서번호	정기검사		중간검사				비 고
		연월일	선박검사원 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 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 의 성명	

(3/3)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종류 및그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등 지정서번호	정기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중간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비 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Official No.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kW] Output [PS]	대 Number of Units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명 (어선원: p, Crew:	명, 어선원 외의 자: p, Other Personnel: p)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 Validity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until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보통용지(1종) 220g/㎡]

(뒤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차 기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사사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9. 8. 20.>

(앞쪽)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Official No.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kW] Output	[PS] 대 Number of Units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명 (어선원 : p (Crew :	명, 어선원 외의 자 : p, Other Personnel : p) 명)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 Validity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until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뒤쪽)

만재출수선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_____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선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_____방향으로 _____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_____mm, _____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만재출수선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출수선(S)·해수만재출수선 또는 만재출수선]의 상면의 위치 :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Summer Load Line(S): _____mm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동기만재출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_____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출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_____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_____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열대만재출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_____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_____mm above from Summer Load Line
	위의 각 만재출수선에 대응하는 담수만재출수선의 위치: 각 만재출수선 상방으로 _____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_____mm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	--	--------------------------------	--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차 기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사사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Official No.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kW] [PS] Output	대 Number of Units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명 (어선원 : p (Crew:	명, p, 어선원 외의 자: Other Personnel: p)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until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9. 8. 20.>

임시항행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Official No.	
선 질 Ship's Material	톤 tons	선 질 Ship's Material	
총 톤 수 Gross Tonnage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명 (어선원: 명, 어선원 외의 자: 명) p (Crew: p, Other Personnel: p)	
항 로 Navigation Route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m until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건조자 Builder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주소 Address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건조번호 Building No.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질 Ship's Material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계획총톤수 Desing Gross Tonnage	톤 tons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Length:	미터, m,	너비: Breadth:	미터, m,	깊이: Depth: 미터 m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킬로와트(kW)] Output	[마력(PS)]	대 Nos.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9. 8. 20.>

예비검사증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전화번호(Tel.): _____)	

어선용품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품명 Name of Articles	규격 Size	형식 Type	수량 Quantity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검사번호 Inspection No.

비고 Remarks	
---------------	--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9. 8. 20.>

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품 명 Name of Articles	규 격 Size	형 식 Type	수 량 Quantity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비 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9. 8. 20.>

건조(제조·정비) 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MAINTENANCE) VERIFICATION**제 호
Certificate No. _____

사업자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지정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형식승인증서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품명 Name of Articles	규격 Size	형식 Type	수량 Quantity	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2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 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제2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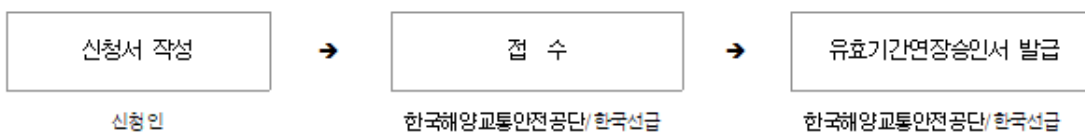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 _____ 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선 질	
총 톤 수	톤	어업의 용도	
현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조건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9. 8. 20.>

재검사등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재 검사 등 의 종 류	[] 건조(별도건조)검사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특별검사	[] 임시검사	[] 임시항행검사
	[] 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 및 확인	[] 예비검사	
	[] 국제협약검사	[] 도면승인	[] 선체두께 측정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 총톤수 측정·개측	
	전회검사기관	검사완료일자	
어 선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또는 제조번호	
	선 적 항	총 톤 수	
형식승인 대상물건	품 명	규격·형식	
	제조번호	검사번호	
비 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 유 서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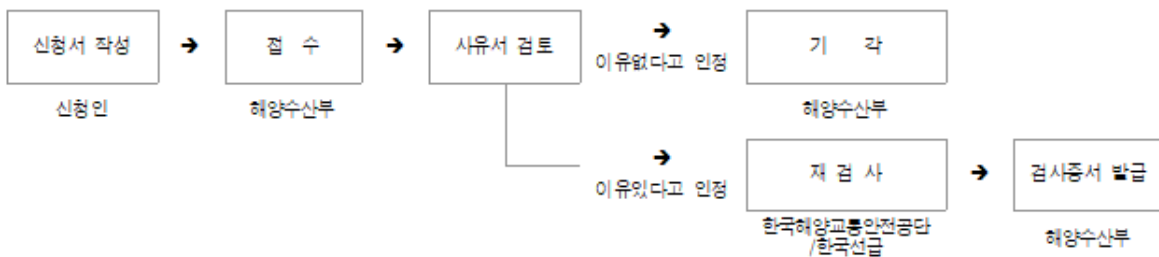
210mm×297mm[택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어선의 검사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9. 8. 20.>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이용목적				
	근거법령(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자료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개발된 자료		<input type="checkbox"/> 가공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전국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자료관리	보관기관				
	안전관리대책				

「어선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사항의 설명자료 1부.	수수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사용목적	신청 건수	전산정보처리조직 작업의뢰일	처리결과 통보일	처리 건수
		성명	주소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 예정일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어선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결지(80g/㎡)]

(뒤쪽)

<p>신청인 제출서류</p>	<p>1. 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합니다) 나. 「어선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어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라.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가. 어선중개업 등록증 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유의사항

1. 벌칙 규정

-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중개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나. 「어선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 다.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어선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라.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마. 「어선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바.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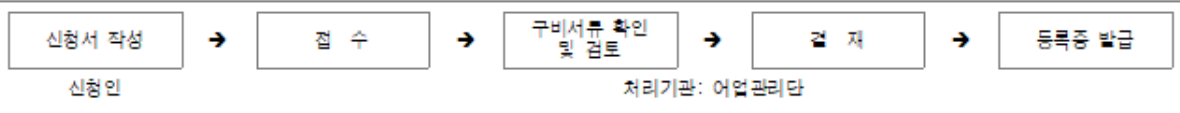
3. 등록 결격사유

- 가. 미성년자
-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어선법」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그 밖의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관리단체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증

사진
(3.5cm×4.5cm)
(법인인 경우 대표자)

어선중개업사무소 상호 (명칭)		중개업 종별	[] 법인 [] 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어선중개업 등록증 번호		등록연월일	
법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어선중개업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어선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중개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6서식] <신설 2017. 6. 28.>

어선중개업 등록대장

대장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중개업사무소 상호(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중개업 종별	[] 법인 []
등록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어선중개업 등록증 번호	
	주소(체류지)				
법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중개업자 성명			생년월일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및 보장기관	보장금액	보장기간	

(사무소 변경사항)

연 월 일	사무소 명칭 변경	연 월 일	사무소 소재지 변경

(행정처분 사항)

연 월 일	처 분 내 용	연 월 일	처 분 내 용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 <신설 2017. 6. 28.>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생년월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유		
휴업·폐업 · 연장기간		
재개업 개시 일자		

「어선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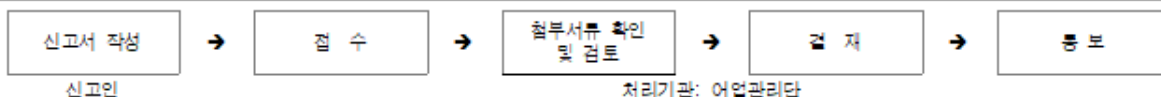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어선증개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 72호서식] <개정 2013.3.24>

어선결함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자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의 명칭	선적항	
	선장	어선회사	
결함내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위의 어선에 대한 결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3.24>

출항정지명령서

제 호	
어선의 명칭	선 장 명
어선번호	국 적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입항일자	출항예정일자
출항정지사유	년 월 일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년 월 일
비 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9. 8. 20.>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 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 톤 수	톤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체재질 []강 []목 []FRP []그 밖의 재질()
	선 적 항		
신청 내용	증 서 명		
	증서번호	제 호	교부일자 년 월 일
	신청사유		
	잃어버린경위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업관리단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구비서류	1. 잃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 또는 대항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유의사항

1. 제 출 처: 해양수산부, 시·군·구, 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2.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평항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지정사업장 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어선중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

3.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잃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